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00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김성원
김대식 · 조은희 · 김승수
이성권 · 정성국 · 엄태영
안철수 · 신성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결합하여 자신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 중 “유지·관리”를 “학교와 연계하여 유지·관리·활용”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① 국가는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 중에서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인증수련활동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포상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결합하여 자신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u>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 ④ (생략)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u>유지·관리</u> 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생략) <u><신설></u>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학교와 연계하여 유지·관리·활용</u> ----- ----- ----- ⑥ (현행과 같음) <u>제39조의2(우수 청소년수련활동</u>

프로그램 지원 등) ① 국가는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 중
에서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증수련활동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원과 포상의 기준 및 방법·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